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가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35	나등급 109
다등급 35	다등급 84
라등급 35	라등급 7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발의년월일 : 2000년 4월 19일

발 의 자 : 최영수의원 외 1인

I.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21세기준비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한다.

II. 제안이유

1999년 10월 21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하고 1999년 10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선임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21세기준비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각각 2000년 4월 25일로 종료되나,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건의가 있어, 200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각각 연장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합결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